

# 중견기업 정책 브리프

VOL.14

2023.2.1.~2023.2.28.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정책활동

### □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3)

- 중견련은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주요내용)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견기업 간담회 (2.7)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규제 개선 과제' 전달
- (주요내용) ▲탄소중립 R&D·시설 투자 지원 확대,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및 산정방식 합리화,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 배출 제외, ▲순환 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탄소세 도입 재검토

### □ 중견기업 통상 현안 설명회 (2.8)

- 중견련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중견기업 통상 현안 설명회'는 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진행 동향 및 대응 계획, ESG 동향 및 정책 방향, 미국 주요 통상 정책 동향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분석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

### □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전문가 좌담회 (2.10)

- (사)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좌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홍 중견기업학회 명예회장, 권종호 중견기업학회 회장, 김지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박정무 기보스틸 부사장이 참석해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을 검토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

###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 (2.13)

- 중견련 등 경제 6단체는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게 되면 산업 현장의 극심한 분쟁 증가가 우려되므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 요청

### □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15)

-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법안의 폐기는 물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전향적인 개정 작업이 이뤄지길 요청

## □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 (2.20)

- 중견련 등 경제 6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힘.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정책동향

###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업종별 수출 투자 지원방안 (2.3)

- '수출 플러스' 실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각 업종별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 ▲설비·R&D·외국인 투자 등 3대 투자 활성화, ▲무역금융 공급 및 해외인증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수출 역량 결집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외환제도 개편 방향 (2.10)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외화 조달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기준 확대(연간 3천만 불→5천만 불),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수시보고 제도 폐지) 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 (2.16)

- 2030년까지 철강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철스크랩(고철) 산업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 등을 중점 목표로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2.17)

- 해외 기술규제 통합 정보플랫폼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해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 기준)의 주력 수출 품목 해외인증,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사항 등 관련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추진전략 (2.22)

-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해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자 통한 탄소저감 기술 개발,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혁신기술 확산을 위한 제도기반 조성 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2.23)

- ① '23년 전체 수출목표(6,850억 불) 및 부처별 수출목표 설정, ② 부처별 수출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협업체계 구축, ③ '23년 범정부 수출지원예산 1.5조 원 투입, 무역금융 362.5조 원 공급 및 12대 新수출동력 확충, ④ 부처 간 협업 프로젝트 추진, 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해소 등을 중점 추진

## 입법동향

### 1 정부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14)

-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①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②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③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등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2.22)

-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9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 반도체 분야 시설 추가 및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②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 확대 : 탄소중립, 에너지환경 분야 시설 추가

### 2 국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2.2)

-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2.3)

-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추가 연장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2.3)

-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추진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2.8)

-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 유한책임회사 포함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2.10)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을 '기상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확대하고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 부여

## □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무경의원, 2.10)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해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보유시설 개방 및 관련 사업 지원 등 시행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2.13)

-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사항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지원사업

### □ [고용노동부] 20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2.1)

-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신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 한도 폐지 등 보완·개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사업 (2.3)

- 8개 중앙부처 및 23개 유관기관은 FTA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①FTA 활용촉진, ②FTA 해외시장진출, ③산업경쟁력 강화, ④한·중 FTA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47개 사업(총 6,758억 원 규모)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2.7)

- 정부 R&D 과제 성공 후 실용화단계(TRL 7~8단계) 기술을 가진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정부 지원 R&D 기술사업화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 (2.7)

- ①융합형 인재양성, ②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③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해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핵심인력 3,735명 양성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2.8)

- 96개 과제, 525억 원 규모의 올해 사업은 ①이차전지, 공정용 소재·부품, 전기차 등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 ②첨단반도체, 첨단바이오의약품, 6G, AAV(Advanced Air Vehicle, 미래형 첨단비행체) 등 미래 첨단신산업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③탄소중립, 폐자원 재활용 등 ESG 대응에 필요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 과제 (2.10)

- ①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개발(2,293억 원), ②자율주행 등 디지털 분야(1,383억 원), ③기반구축·사업화 지원(1,003억 원), ④인력양성(315억 원) 등 총 4,994억 원 규모 4개 분야 311개 과제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 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2.15)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우선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관련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감리 포함), ▲시험 운전 등을 진행하는 경우,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NDC 달성에 활용

\* 베트남('21.5. 既체결), 몽골('22.8. 가서명), 가봉('22.12. 가서명), UAE('23.1.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

-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고부가 영역의 전주기 수주 및 후속 사업 연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의 50~80%(중소기업 80%, 중견·대기업 50% 이내)를 지원

#### □ [관세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2.17)

-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자문 비용 차등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 (2.20)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기술 분야 및 소부장 산업 범용기술과 마이크로 OLED 등 고도 기술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

####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2.24)

-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기업 대상으로 기업 규모, 사업 성격을 고려해 이차 비용의 일부를 보전(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중견기업에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 금리(중소기업 0.4%, 대기업·공공기업 0.2%) 적용